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환경공단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향 조정 〉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31)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환경공단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향 조정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28일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한국환경공단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향 조정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 ----- <u>500만원</u>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6조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제1항²⁾에 따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 「한국환경공단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3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과태료 상한액(100만원)은 동 법률이 2009년 2월 6일 제정된 이래 16년 이상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 각종 범행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³⁾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명칭도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상한액의 현실화를 통해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법 위반 행위의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⁴⁾.

한편, 동 개정안은 명칭도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데 환경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과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⁵⁾, 국립생태원⁶⁾의 경우 명칭도용에 따른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3.8.)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2022년 17,726건에서 2023년 350,010건으로 1,8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4)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된 2010년 1월 1일 이후 2025년 6월 말 현재까지도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0조 및 제34조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

한국수자원공사⁷⁾,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⁸⁾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명칭도용 과태료 상한액 현황]

구 분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명칭도용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0조 및 제34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5조의2 및 제41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0조	「한국환경공단법」 제6조 및 제34조
제정 또는 개정시기	2015.12.1	2013.6.12.	2007.1.19	2000.1.21	2009.2.26

자료: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33

7) 「한국수자원공사법」 제5조의2 및 제41조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0조